

제19장
분쟁해결

제19.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가. 제소 당사자란 제19.6조(협의)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어떠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을 말한다.

나. 분쟁 당사자들이란 제소 당사자와 피소 당사자를 말한다.

다. 분쟁 당사자란 제소 당사자 또는 피소 당사자를 말한다.

라. 피소 당사자란 제19.6조(협의)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어떠한 당사자 를 말한다.

마. 절차규칙이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된 패널 절차를 위한 절차규칙을 말한다. 그리고

바. 제3자란 제19.10조(제3자들)제2항에 따라 통보를 하는 어떠한 당사자를 말 한다.

제19.2조
목적

이) 장은 이 협정상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규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9.3조 적용범위¹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된다.
 - 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당사자들 간 분쟁의 해결, 그리고
 - 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조치가 이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거나 그 다른 당사자가 이 협정상의 자신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했다고 여기는 경우
2. 제19.5조(분쟁해결절차의 선택)를 조건으로, 이 장은 당사자가 당사자인 그 밖의 협정에 따라 이용 가능한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그 당사자의 권리와 저해하지 않는다.

제19.4조 일반규정

1. 이 협정은 국제공법의 관습적인 해석규칙에 따라 해석된다.
2. 이 협정에 통합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패널은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채택된 세계무역기구 패널과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 보고서의 관련 해석을 또한 고려한다. 패널의 조사결과 및 판정은 이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증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없다.²
3. 이 장에 따른 모든 통보, 요청 및 답변은 서면으로 한다.

¹ 비위반 제소는 이 협정상 허용되지 않는다.

² 당사자들은 이 항의 첫 번째 문장이 이 협정에 통합되지 않은 세계무역기구협정 규정과 관련하여 패널이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채택된 세계무역기구의 패널 및 세계무역기구의 상소기구 보고서의 관련 해석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4. 분쟁 당사자들은 분쟁의 각 단계에서 협력과 협의를 통하여 그 분쟁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도록 권장된다. 상호 합의된 해결에 도달한 경우, 그 합의의 조건은 분쟁 당사자들에 의하여 공동으로 그 밖의 당사자들에 통보된다.

5. 이 장에 규정된 기간은 제19.10조(제3자들)에 규정된 제3자들의 권리와 저해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분쟁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6.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가 취한 조치로 인하여 이 협정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에게 발생하는 어떠한 혜택이 침해되고 있다고 여기는 분쟁의 신속한 해결은 이 협정의 효과적인 기능 및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간 적절한 균형의 유지에 필수적이다.

제19.5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1. 분쟁이 이 협정과 분쟁 당사자들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 무역 또는 투자 협정상의 실질적으로 동등한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경우, 제소 당사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분쟁해결 절차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분쟁해결절차는 다른 절차를 배제하고 이용된다.

2. 이 조의 목적상, 제소 당사자가 제19.8조(패널의 설치를 위한 요청)제1항에 따라 패널의 설치를 요청했거나 다른 국제 무역 또는 투자 협정상의 분쟁해결 패널 또는 재판소의 설치를 요청했거나 사안을 회부한 때에는 제소 당사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해결 절차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된다.

3. 이 조는 분쟁 당사자들이 특정한 분쟁에 이 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제19.6조 협의

1. 어떠한 당사자는 제19.3조(적용범위)제1항에 기술된 사안과 관련하여 그 밖의 당

사자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피소 당사자는 제소 당사자의 협의 요청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그러한 협의를 위하여 적절한 기회를 부여한다.

2. 제1항에 따른 협의의 요청은 문제가 되는 조치의 적시와 제소의 사실적 및 법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 그 요청의 사유를 제시한다.

3. 제소 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협의를 위한 요청의 사본을 동시에 그 밖의 당사자들에 제공한다.

4. 피소 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협의 요청에 관한 자신의 접수를 제소 당사자에 대한 통보의 방식으로 즉시 확인하고, 통보는 요청의 접수일을 적시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요청이 이루어진 날이 피소 당사자의 요청 접수일로 간주된다. 피소 당사자는 그 통보의 사본을 동시에 그 밖의 당사자들에 제공한다.

5. 피소 당사자는

가. 자신의 요청 접수일 후 7일 내에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협의 요청에 답변한다. 그리고

나. 답변의 사본을 동시에 그 밖의 당사자들에 제공한다.

6. 피소 당사자는 다음의 기간 내에 협의를 개시한다.

가.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 접수일 후 15일, 또는

나. 그 밖의 모든 사안의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 접수일 후 30일

7. 분쟁 당사자들은 선의로 협의에 참여하고 협의를 통하여 상호 합의하는 해결에 도달하도록 모든 노력을 한다. 이를 위하여 분쟁 당사자들은

가.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이행 또는 적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포함하여,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 협의 과정에서 교환된 비밀 또는 재산권적 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와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그리고

다. 협의를 위하여 그 사안에 대하여 책임이 있거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정부기관 또는 그 밖의 규제기구의 직원이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8. 협의는 비밀로 하며 후속 또는 그 밖의 절차에서 어떠한 분쟁 당사자의 권리도 저해하지 않는다.

9. 분쟁 당사자들이 아닌 당사자가 협의에 대하여 실질적인 무역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여기는 경우, 그러한 당사자는 제3항에 언급된 협의를 위한 요청 사본의 접수일 후 7일 내에 그 협의에 참여하려는 자신의 희망을 분쟁 당사자들에 통보할 수 있다. 통보 당사자는 그 통보의 사본을 동시에 그 밖의 당사자들에 제공한다. 통보 당사자는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협의에 참여한다.

제19.7조

주선, 조정 또는 중개

1. 분쟁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주선, 조정 또는 중개를 포함하는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의 절차는 언제든지 개시될 수 있고, 어떠한 분쟁 당사자에 의해서도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2.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제1항에 언급된 그러한 절차는 사안이 이 장에 따른 패널에 의하여 조사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될 수 있다.

3. 제1항에 언급된 그러한 절차와 관련된 절차 그리고 이러한 절차에서 분쟁 당사자가 취한 입장은 비밀이며 어떠한 추가적인 또는 그 밖의 절차에서 어떠한 분쟁 당사자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제19.8조

패널의 설치를 위한 요청

1. 제소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피소 당사자에 대한 통보의 방식으로 사안을 조사하기 위한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가. 피소 당사자가

1) 제19.6조(협의)제5항가호에 따른 협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은 경우,
또는

2) 제19.6조(협의)제6항에 따라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나. 협의를 통하여 다음의 기한 내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1) 부패성 상품에 관련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제19.6조(협의)제1항
에 따라 이루어진 협의 요청에 대한 피소 당사자의 접수일 후 20일, 또는

2) 그 밖의 사안과 관련해서는 제19.6조(협의)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협의
요청에 대한 피소 당사자의 접수일 후 60일

2.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패널의 설치를 위한 요청은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기에 충분하도록 패널에 의하여 다루어질 문제가 되는 구체적 조치를 적시하고,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을 포함하여 제소의 사실적 및 법적 근거의 상세한 내용을 제공한다.

3. 제소 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패널의 설치를 위한 요청의 사본을 동시에 그 밖의 당사자들에 제공한다.

4. 피소 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패널의 설치를 위한 요청에 관한 자신의 접수를 제소 당사자에 대한 통보의 방식으로 즉시 확인하고, 그 통보는 요청의 접수일을 적시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요청이 이루어진 날이 피소 당사자의 요청 접수일로 간주된다. 피소 당사자는 그 통보의 사본을 동시에 그 밖의 당사자들에 제공한다.

5. 패널의 설치를 위한 요청이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패널은 제19.11조(패널의 설치 및 재소집)에 따라 설치된다.

제19.9조

복수 제소자를 위한 절차

1. 둘 이상의 당사자가 동일한 사안과 관련하여 패널의 설치 또는 재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안과 관련한 제소를 조사하기 위하여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단일 패널이 설치되거나 재소집되어야 할 것이다.

2. 단일 패널은 별도의 패널들이 제소를 조사하였을 경우 분쟁 당사자들이 향유했을 권리가 결코 침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조사를 조직하고 조사 결과와 판정을 분쟁 당사자들에 제시한다.

3. 동일한 사안과 관련한 제소를 조사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패널이 설치되거나 재소집되는 경우, 분쟁 당사자들은 동일한 개인이 각각의 별도 패널에서 패널위원 역할을 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패널들은 가능한 최대한 패널 과정의 일정이 조화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서로 그리고 분쟁 당사자들과 협의한다.

제19.10조

제3자들

1. 분쟁 당사자들과 다른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는 패널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다.

2. 패널에 회부된 사안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는 다음에 따라 요청이 이루어진 날 후 10일 내에 분쟁 당사자들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통보할 수 있다.

가. 제19.8조(패널의 설치를 위한 요청)제1항, 또는

나. 제19.16조(이행 검토)제1항, 또는

다. 제19.17조(보상 및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제13항

통보 당사자는 그 통보의 사본을 동시에 그 밖의 당사자들에 제공한다.

3. 제2항에 따라 자신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통보하는 당사자는 제3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4. 비밀 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각 분쟁 당사자는 잠정 보고서의 제출 전에 제출되는 자신의 서면 입장, 구두 진술의 서면본 그리고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그러한 입장, 진술 및 답변서가 패널에게 제출될 때 각각의 제3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5. 제3자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가. 비밀 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잠정 보고서 제출 전 분쟁 당사자들과 함께 패널의 제1차 및 제2차 심리 참석

나. 제1차 심리 전 최소 1회의 서면 입장 제출

다. 제1차 심리 중 그러한 목적으로 별도로 마련된 회기에서 패널에 대한 구두 진술 및 패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그리고

라. 제3자들에 대한 패널의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

6. 제3자가 서면 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를 패널에 제공하는 경우, 제3자는 동시에 이를 분쟁 당사자들과 그 밖의 제3자들에 제공한다.

7. 패널은 분쟁 당사자들의 합의로 패널 절차 참여와 관련한 추가적인 또는 보충적인 권리를 제3자에 부여할 수 있다.

제19.11조

패널의 설치 및 재소집

1. 패널 설치 요청이 제19.8조(패널의 설치를 위한 요청)제1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패널은 이 조에 따라 설치된다.
2.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3명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조에 따른 패널위원들의 모든 임명과 후보자 지명은 제10항 및 제13항에 언급된 요건과 합치한다.
3. 제19.8조(패널의 설치를 위한 요청)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패널의 설치를 위한 요청의 접수일부터 10일 내에, 분쟁 당사자들은 분쟁의 사실적, 기술적 그리고 법적 측면을 고려하여, 패널의 구성을 위한 절차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합의된 그러한 모든 절차는 제15항 및 제16항의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된다.
4. 분쟁 당사자들이 제19.8조(패널의 설치를 위한 요청)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패널의 설치를 위한 요청의 접수일부터 20일 내에 패널의 구성을 위한 절차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 분쟁 당사자는 그 이후 언제라도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된 절차의 이용을 희망한다는 것을 다른 쪽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통보가 이루어지는 경우, 패널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구성된다.
5. 제소 당사자는 제4항에 따라 이루어진 통보의 접수일부터 10일 내에 1명의 패널위원을 임명한다. 피소 당사자는 제4항에 따라 이루어진 통보의 접수일부터 20일 내에 1명의 패널위원을 임명한다. 분쟁 당사자는 자신의 패널위원의 임명을 다른 쪽 분쟁 당사자에 통보한다.
6. 제5항에 따른 패널위원의 임명 후, 분쟁 당사자들은 패널의장의 역할을 수행할 세 번째 패널위원의 임명에 합의한다. 그러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분쟁 당사자는 최대 3명의 패널의장 후보 명부를 다른 쪽 분쟁 당사자에 제공할 수 있다.

7. 제4항에 따라 이루어진 통보의 접수일부터 35일 내에 패널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분쟁 당사자는 25일의 추가 기간 내에 세계무역기구의 사무총장에게 남아 있는 패널위원에 대한 임명을 그러한 요청일부터 30일 내에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라 제공된 후보 명부는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도 제공되며 이는 요구된 임명을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8.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이 자신이 임명할 수 없다고 분쟁 당사자들에 통보하거나, 또는 제7항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일부터 30일 내에 남아 있는 패널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분쟁 당사자는 상설중재재판소의 사무총장에게 남아 있는 패널위원을 신속하게 임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라 제공된 후보 명부는 상설중재재판소의 사무총장에게도 제공되며, 이는 제12항에 따라 요구된 임명을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³

9. 패널의 설치일은 마지막 패널위원이 임명되는 날이다.

10. 각 패널위원은

가. 법, 국제 무역,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 무역 협정 상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한 전문성 또는 경험을 보유한다.

나. 객관성, 신뢰성 그리고 건전한 판단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선정된다.

다. 어떠한 당사자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제휴관계가 없거나 지시를 받지 않는다.

라. 어떠한 자격으로도 해당 사안을 처리하지 않았어야 한다.

마. 자신의 독립성이나 공평성에 대한 정당한 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분쟁 당사자들에 공개한다. 그리고

바. 절차 규칙에 부속되는 행동 규범을 준수한다.

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은 이 항에 따라 남아 있는 패널위원을 임명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

11. 제10항의 요건에 추가하여,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임명된 각 패널위원은

가. 국제공법, 국제 무역 그리고 국제 무역 협정상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포함하여 법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다.

나. 세계무역기구 패널 또는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 또는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서 직무를 수행했거나 국제통상법이나 정책을 가르쳤거나 저술한 또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고위급 무역 정책 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했던 개인을 포함하여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정부 또는 비정부 개인이다. 그리고

다. 패널의장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1) 세계무역기구 패널 또는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에서 직무를 수행했고

2) 분쟁의 대상과 관련한 전문성 또는 경험을 갖추었다.

12. 제8항에 따라 그리고 제10항 및 제11항에 언급된 요건에 따라 패널위원을 임명할 때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다음의 절차가 이용된다.

가. 상설중재재판소의 사무총장은 분쟁 당사자들에 최소한 3명의 패널위원 후보가 포함된 동일한 명부를 통보한다.

나. 가호에 언급된 명부의 접수일부터 15일 내에 각 분쟁 당사자는 자신이 반대하는 후보자를 삭제하고, 명부의 남아 있는 후보자를 자신의 선호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 후 상설중재재판소의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 나호에 언급된 기간의 만료 후, 상설중재재판소의 사무총장은 자신에게 제출된 명부의 남아 있는 후보자들 중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적시한 선호의 순서에 따라 남아 있는 패널위원을 임명한다. 그리고

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 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남아 있는 패널위원이 임명될 수 없는 경우, 상설중재재판소의 사무총장은 자신의 재량으로 이 장에 따라

남아 있는 패널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13.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의장은 어떠한 분쟁 당사자나 제3자의 국민이 아니고, 어떠한 분쟁 당사자에도 통상적인 거주지를 가지지 않는다.

14. 각 패널위원은 정부의 대표, 또는 어떠한 조직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어떠한 당사자도 패널에 회부된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으로서 패널위원에게 지시를 하거나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않는다.

15. 이 조에 따라 임명된 패널위원이 사임하거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후임 패널위원은 원래의 패널위원의 임명에 대하여 규정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임명되고, 원래의 패널위원의 모든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패널의 업무는 후임 패널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중단된다. 그러한 경우, 관련 패널 절차 기간은 후임 패널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정지된다.

16. 제19.16조(이행 검토) 또는 제19.17조(보상 및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에 따라 패널이 재소집되는 경우, 재소집된 패널은 실행 가능한 경우 원래의 패널과 같은 패널 위원을 가진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대체 패널위원은 원래의 패널위원의 임명에 대하여 규정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임명되고, 원래의 패널위원의 모든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제19.12조

패널의 기능

1. 패널은 다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포함하여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

가. 사건의 사실관계

나. 분쟁 당사자들이 인용한 이 협정 규정의 적용 가능성, 그리고

다. 다음의 여부

- 1)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상 의무에 불합치하는지, 또는
 - 2) 피소 당사자가 이 협정상 자신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했는지
2. 패널은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 설치일부터 20일 내에 다음의 위임사항을 가진다.

“제19.8조(패널의 설치를 위한 요청)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패널의 설치 요청에 언급된 사안을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조사하고, 이 협정에 규정된 대로 조사 및 판정을 하는 것”
3. 패널은 자신의 보고서에 다음을 명시한다.
 - 가. 분쟁 당사자들 및 제3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는 서술적 부분
 - 나. 사건의 사실관계 및 이 협정 규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
 - 다. 다음의 여부에 대한 판정
 - 1)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상 의무와 불합치하는지, 또는
 - 2) 피소 당사자가 이 협정상 자신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 라. 나호 및 다호에 언급된 조사 결과 및 판정의 사유
4. 제3항에 추가하여, 패널은 분쟁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요청했거나 자신의 위임사항에 규정된 분쟁과 관련한 그 밖의 조사결과 및 판정을 자신의 보고서에 포함한다. 패널은 피소 당사자가 조사 결과 및 판정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5.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그 보고서를 이 협정의 관련 규정, 분쟁 당사자들의 서면 입장 및 주장, 그리고 제19.13조(패널 절차)제12항 및 제13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6. 패널은 이 협정에 규정된 대로만 조사, 판정 및 제안을 한다.
7. 각 제3자의 서면 입장은 패널 보고서에 반영된다.
8. 패널의 조사결과 및 판정은 이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증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없다.
9. 패널은 분쟁 당사자들과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분쟁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10.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19.16조(이행 검토) 및 제19.17조(보상 및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에 따라 재소집된 패널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19.13조 패널 절차

1. 패널은 이 장을 준수하고,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절차 규칙을 따른다.
2. 분쟁 당사자의 요청 또는 자체 발의로, 제19.11조(패널의 설치 및 재소집)에 따라 설치된 패널은 분쟁 당사자들과 협의 후, 이 장 및 절차 규칙과 충돌하지 않는 추가적인 절차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제19.16조(이행 검토) 또는 제19.17조(보상 및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에 따라 재소집된 패널은 분쟁 당사자들과 협의 후, 자신이 이 장 또는 절차 규칙으로부터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대로 이 장 및 절차 규칙과 충돌하지 않는 자신의 절차 규칙을 수립할 수 있다.
3. 패널 절차는 패널 과정을 과도하게 지체시키지 않으면서, 양질의 보고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융통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일정표

4. 분쟁 당사자들과 협의 후, 제19.11조(패널의 설치 및 재소집)에 따라 설치되는 패널은 패널의 설치일부터 15일 내에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패널 과정을 위한 일정표를 정한다. 패널의 설치일부터 분쟁 당사자들에 대한 패널 최종 보고서의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일반 규칙으로서 7개월을 넘지 않는다.

5. 제19.16조(이행 검토) 또는 제19.17조(보상 및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제13항에 따라 재소집된 패널은 재소집일부터 15일 내에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제19.16조(이행 검토)에 명시된 기간을 고려하여 이행 검토 과정을 위한 일정표를 정한다.

패널 절차

6. 패널은 컨센서스에 의하여 조사 및 판정을 하며, 패널이 컨센서스에 이를 수 없는 경우, 다수결로 조사 및 판정을 할 수 있다. 패널위원은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별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개별 패널위원에 의하여 보고서에 표현된 의견은 익명이다.

7. 패널의 심의는 비밀로 유지된다. 분쟁 당사자들 및 제3자들은 패널의 초청을 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회의에 참석한다.

8. 패널이 고려 중인 사안에 관하여 패널과 일방 분쟁 당사자만의 의사소통이 있어서는 안된다.

서면 입장

9. 각 분쟁 당사자는 서면으로 사건의 사실관계, 그 주장 및 항변을 제시할 기회를 갖는다. 제4항 및 제5항에 더하여, 패널에 의하여 정해진 일정표는 분쟁 당사자들 및 제3자들의 서면 입장 제출을 위한 정확한 마감기한을 포함한다.

심리

10. 제4항 및 제5항에 더하여, 패널에 의하여 정해진 일정표는 분쟁 당사자들이 그들의 사건을 패널에 제시할 수 있도록 최소 1회의 심리를 규정한다. 일반 규칙으로서, 일정표는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 2회를 넘는 심리를 규정하지 않는다.

비밀유지

11. 패널에 제출하는 서면 입장은 비밀로 취급되나, 분쟁 당사자들은 이용 가능하고, 제 19.10조(제3자들)에 규정된 경우, 제3자들도 이용 가능하다. 분쟁 당사자들, 제3자들 및 패널은 분쟁 당사자 또는 제3자가 비밀로 지정하여 패널에 제출한 정보는 비밀로 취급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분쟁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자신의 입장에 관한 진술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분쟁 당사자 또는 제3자가 비밀로 지정하여 패널에 제출한 진술 또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 분쟁 당사자 또는 제3자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중에 공개될 수 있는 자신의 서면 입장에 포함된 비밀이 아닌 정보의 요약본을 제공한다.

추가적인 정보 및 기술적 자문

12. 각 분쟁 당사자 및 각 제3자는 패널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패널의 정보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실하게 응답한다.

13. 분쟁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자체 발의로, 패널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어떠한 개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패널은 분쟁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한다. 분쟁 당사자들이 패널이 추가적인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을 구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합의하는 경우, 패널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패널은 분쟁 당사자들에 자신이 제공받는 추가적인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 및 의견 제시의 기회를 제공한다. 패널이 자신의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추가적인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을 고려하는 경우, 패널은 그 추가적인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에 대한 분쟁 당사자의 의견 또한 고려한다.

패널 보고서

14. 제19.11조(패널의 설치 및 재소집)에 따라 설치된 패널은 그 설치일부터 150일 내

에 분쟁 당사자들에 자신의 잠정 보고서를 제출한다.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패널은 그 잠정 보고서를 그 설치일부터 90일 내에 제출하도록 노력한다.

15. 예외적인 경우, 제19.11조(패널의 설치 및 재소집)에 따라 설치된 패널이 제14항에 언급된 기간 내에 잠정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 패널은 분쟁 당사자들에 잠정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추정 기간과 함께 지연되는 이유를 통보한다. 모든 지연은 30일의 추가 기간을 넘지 않는다.

16. 분쟁 당사자는 잠정 보고서의 접수일부터 15일 내에 잠정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잠정 보고서에 대한 분쟁 당사자들의 서면 의견을 고려한 후, 패널은 적절하다고 여기는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잠정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17. 패널은 잠정 보고서의 제출일부터 30일 내에 분쟁 당사자들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18. 패널의 잠정 및 최종 보고서는 분쟁 당사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안이 작성된다.

19. 패널은 분쟁 당사자들에 대한 최종 보고서의 제출일부터 7일 내에 그 최종 보고서를 그 밖의 당사자들에 회람하고, 그 이후 언제라도 분쟁 당사자는 최종 보고서에 포함된 비밀 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최종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제19.14조 절차의 정지 및 종료

1. 분쟁 당사자들은 패널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합의하는 날부터 12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언제라도 패널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정지된 패널 절차는 어떠한 분쟁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개된다. 그러한 정지의 경우, 패널 절차를 위한 관련 기간은 업무가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된다. 패널의 업무가 12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정지된 경우,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 설치를 위한 권한은 소멸된다.

2.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른 경우, 분쟁 당사자들은 패널 절차를 종료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분쟁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패널의장에게 통보한다.
3. 패널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분쟁 당사자들에 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되도록 제안할 수 있다.
4. 분쟁 당사자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패널 절차가 정지 또는 종료되었거나 패널 설치를 위한 권한이 소멸되었다는 것을 그 밖의 당사자들에 공동으로 통보한다.

제19.15조 최종 보고서의 이행

1. 패널의 조사 결과 및 판정은 최종적이며 분쟁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피소 당사자는
 - 가. 패널이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상의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는 경우, 그 조치를 합치시킨다. 또는
 - 나. 패널이 피소 당사자가 달리 이 협정상의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하는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한다.
2. 제19.13조(패널 절차)제17항에 따른 분쟁 당사자들에 대한 패널의 최종 보고서 제출일부터 30일 내에, 피소 당사자는 제소 당사자에 이행과 관련한 자신의 의사를 통보한다. 그리고
 - 가. 피소 당사자가 자신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했다고 여기는 경우, 피소 당사자는 자체 없이 제소 당사자에 통보한다. 피소 당사자는 준수를 달성한 것으로 자신이 여기는 조치의 서술, 조치의 효력 발생일 그리고 조치의 문안이 있는 경우 이를 통보에 포함시킨다. 또는
 - 나.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즉시 준수하는 것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 피소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신이 필요할 것으로 여기는 합리적인 기간을 그러한 준수를 위하여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에 대한 적시와 함께 제소 당사자에 통보한다.

3. 피소 당사자가 제2항나호에 따라 자신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즉시 준수하는 것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피소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갖는다.

4. 제3항에 언급된 합리적인 기간은, 가능한 경우 언제나, 분쟁 당사자들에 의하여 합의된다. 분쟁 당사자들이 분쟁 당사자들에 대한 패널의 최종 보고서 제출일부터 45일 내에 합리적인 기간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분쟁 당사자는 패널의장이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하도록 의장과 다른 쪽 분쟁 당사자에 대한 통보의 방식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은 분쟁 당사자들에 대한 패널의 최종 보고서 제출일부터 120일 내에 이루어진다.

5. 제4항에 따라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패널의장은 분쟁 당사자들에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결정, 그리고 그러한 결정에 대한 사유를 패널의장의 그 요청 접수일부터 45일 내에 제출한다.

6. 지침으로서, 패널의장이 결정한 합리적인 기간은 분쟁 당사자들에 대한 패널의 최종 보고서의 제출일부터 15개월을 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러한 합리적인 기간은 특정한 상황에 따라 짧거나 길 수 있다.

7. 피소 당사자가 자신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했다고 여기는 경우, 피소 당사자는 지체 없이 제소 당사자에 통보한다. 피소 당사자는 준수를 달성한 것으로 자신이 여기는 조치의 서술, 조치의 효력 발생일 그리고 조치의 문안이 있는 경우 이를 통보에 포함시킨다.

제19.16조

이행 검토⁴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9.6조(협의)에 따른 협의는 이 조에 따른 절차에 대하여 요구되지 않는다.

1. 분쟁 당사자들이 제19.15조(최종 보고서의 이행)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의 존재 또는 이 협정과의 합치성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분쟁은 이러한 목적으로 재소집된 패널(이하 이 장에서 “이행 검토 패널”이라 한다)의 이용을 통하여 해결된다. 제소 당사자는 피소 당사자에 대한 통보의 방식으로 이행 검토 패널의 재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소 당사자는 그 요청의 사본을 동시에 그 밖의 당사자들에 제공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요청은 다음 중 이른 시기 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가. 제19.15조(최종 보고서의 이행)에 따라 수립된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또는
나. 제19.15조(최종 보고서의 이행)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했다는 제19.15조
(최종 보고서의 이행) 제2항가호 또는 제7항에 따라 이루어진 피소 당사자의
제소 당사자에 대한 통보

3. 이행 검토 패널은 다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포함하여,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

가. 제19.15조(최종 보고서의 이행)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피소
당사자가 취한 모든 조치의 사실관계, 그리고
나. 제19.15조(최종 보고서의 이행)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피소
당사자가 취한 모든 조치의 존재 또는 이 협정과의 합치성

4. 이행 검토 패널은 자신의 보고서에 다음을 명시한다.

가. 분쟁 당사자들과 제3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는 서술적 부분
나. 이 조에 따라 발생하는 사건의 사실관계 및 이 협정 규정의 적용 가능성에 대
한 조사 결과
다. 제19.15조(최종 보고서의 이행)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취해

진 조치의 존재 또는 이 협정과의 합치성에 관한 판정, 그리고

라. 나호 및 다호에 언급된 조사 결과 및 판정의 사유

5. 제1항에 따라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행 검토 패널은 요청일부터 15일 내에 재소집한다. 이행 검토 패널은 가능한 경우 재소집일부터 90일 내에 잠정 보고서를, 그 후 30일 내에 최종 보고서를 분쟁 당사자들에 제출한다. 이행 검토 패널이 관련 기간 내에 어느 하나의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 이행 검토 패널은 그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추정 기간과 함께 지연되는 이유를 분쟁 당사자들에 통보한다.

6.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일부터 이행 검토 패널의 최종 보고서의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150일을 넘지 않는다.

제19.17조

보상 및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1. 보상 및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피소 당사자가 제19.15조(최종 보고서의 이행) 제1항에 따른 의무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용 가능한 임시적인 조치이다. 다만, 보상이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중 어느 것도 제19.15조(최종 보고서의 이행) 제1항에 따른 의무의 준수보다 선호되지 않는다. 보상은 자발적이고,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 협정에 합치한다.

2. 다음의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가. 피소 당사자가 제19.15조(최종 보고서의 이행)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자신이 준수하지 않겠다고 제소 당사자에 통보했을 경우, 또는

나. 피소 당사자가 제19.15조(최종 보고서의 이행) 제2항에 따라 제소 당사자에 통보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다. 피소 당사자가 제19.15조(최종 보고서의 이행) 제7항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의 만료까지 제소 당사자에 통보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라. 이행 검토 패널이 피소 당사자가 제19.15조(최종 보고서의 이행)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제19.16조(이행 검토)에 따라 판정하는 경우

피소 당사자는 제소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 수용 가능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하여 협상을 개시한다.

3. 분쟁 당사자들이

가.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의 접수일 후 30일 내에 보상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나. 보상에 합의했으나, 피소 당사자가 그 합의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제소 당사자는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적용을 정지하려는 자신의 의사를 그 이후 언제라도 피소 당사자 및 그 밖의 당사자들에 통보할 수 있고, 그 통보의 접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를 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소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그 항에 따른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개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가. 제9항에 따라 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나. 상호 합의한 해결책에 도달한 경우

5.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진 통보는 의도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수준을 명시하고 제소 당사자가 그러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겠다고 제안하는 관련 분야 또는 분야들을 적시한다.

6. 어떠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할 때 제소 당사자는 다음의

원칙을 적용한다.

- 가. 제소 당사자는 패널이 이 협정상의 의무에 불합치하거나 이 협정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정한 그 동일 분야 또는 분야들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우선 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 나. 제소 당사자는 동일 분야 또는 분야들에서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것이 실행 가능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 그 밖의 분야들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수 있다.
7.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하다.
8. 피소 당사자가
- 가. 제안된 정지의 수준에 반대하는 경우, 또는
 - 나. 자신이 보상 합의의 조건을 준수했다고 여기는 경우, 또는
 - 다. 제6항에 규정된 원칙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경우
- 피소 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진 통보의 접수일부터 30일 내에, 제소 당사자에 대한 통보의 방식으로 사안의 조사를 위하여 패널의 재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피소 당사자는 그 요청의 사본을 동시에 그 밖의 당사자들에 제공한다.
9. 제8항에 따라 요청이 이루어진 때, 패널은 요청일부터 15일 내에 재소집한다. 재소집된 패널은 재소집일부터 45일 내에 분쟁 당사자들에 자신의 판정을 제공한다.
10. 제9항에 따라 재소집된 패널이 정지의 수준이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하지 않다고 판정하는 경우, 패널은 동등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여기는 적절한 정지의 수준을 판정한다. 패널이 피소 당사자가 보상 합의의 조건을 준수했다고 판정하는 경우, 제소 당사자는 제3항에 언급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지 않는다. 패널이 제소 당사자가 제6항에 규정된 원칙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정하는 경우, 제소 당사자는 그 항에 합치하게 그 원

칙을 적용한다.

11. 제소 당사자는 제10항에 언급된 패널의 판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만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수 있다.

12.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임시적이고 제19.15조(최종 보고서의 이행)제1항에 따른 의무가 준수되었거나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도달할 때까지만 적용된다.

13. 다음의 경우

가.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조에 따라 제소 당사자에 의하여 행사된 경우,

나. 피소 당사자가 자신이 제19.15조(최종 보고서의 이행)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했다는 것을 제19.15조(최종 보고서의 이행)제7항에 따라 통보한 경우,
그리고

다. 분쟁 당사자들이 제19.15조(최종 보고서의 이행)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의 존재 또는 이 협정과의 합치성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분쟁 당사자는 다른 쪽 분쟁 당사자에 대한 통보의 방식으로 그 사안의 조사 를 위하여 패널의 재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당사자는 그 요청 사본을 동시에 그 밖의 당사자들에 제공한다.⁵

14. 제13항에 따라 패널이 재소집될 경우, 제19.16조(이행 검토)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15. 제13항에 따라 재소집된 패널이 피소 당사자가 제19.15조(최종 보고서의 이행)제

⁵ 패널이 이 항에 따라 재소집될 경우, 패널은 요청이 있는 경우, 피소 당사자가 취한 조치에 대한 조사 결과에 비추어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의 수준이 여전히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적절한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했다고 판정하는 경우, 제소 당사자는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신속하게 종료한다.

제19.18조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들과 관련한 특별 및 차등 대우

1.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와 관련된 분쟁 원인의 판정 및 분쟁해결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의 특별한 상황이 특히 고려된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와 관련된 이러한 절차에 따른 사안을 제기할 때 적절한 자제를 행사한다. 무효화 또는 침해가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에 의하여 취해진 조치로부터 초래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제소 당사자는 제19.17조(보상 및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 또는 이러한 절차에 따른 그 밖의 의무와 관련하여 적절한 자제를 행사한다.

2. 분쟁 당사자가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인 경우, 패널 보고서는 분쟁해결절차의 과정에서 그 당사자에 의하여 제기된 이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를 위한 특별 및 차등 대우에 관한 관련 규정이 어떠한 형태로 고려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명시한다.

제19.19조

경비

1.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분쟁 당사자는 자신이 임명한 패널위원의 비용과 자신의 경비 및 법적 비용을 부담한다.

2.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의장의 비용과 패널 절차 진행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는 분쟁 당사자들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9.20조

접촉선

1. 각 당사자는 그 당사자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30일 내에 이 장을 위한 접촉선을 지정하고 그 밖의 당사자들에 접촉선의 세부 연락사항을 통보한다. 각 당사자는 그러한 세부 연락사항에 대한 모든 변경을 그 밖의 당사자들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2. 이 장에 따른 절차와 관련된 통보, 요청, 답변,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는 관련 당사자에 자신의 지정된 접촉선을 통하여 전달된다. 관련 당사자는 자신의 지정된 접촉선을 통하여 그러한 문서의 접수의 확인을 서면으로 제공한다.

제19.21조

언어

1. 이 장에 따른 모든 절차는 영어로 수행된다.
2. 이 장에 따른 절차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는 영어로 작성된다. 원본 문서가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절차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그 문서를 제출하는 당사자는 영어 번역본과 함께 그 문서를 제출한다.